

인천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나656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나6565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단152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동혁(소송구조)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진

변론종결 2024. 10. 11.

판결선고 2024. 11. 15.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단1520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G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 10. 19. 인천지방법원 2021년 금제11940호로 공탁한 44,570,060원 중 각 14,856,68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각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수용보상금 공탁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대상청구권으로 변경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실효되었으므로 항소취지는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9행 “2021. 10. 20.”을 “2021. 10. 21.”로 고쳐 쓴다. 제2면 밑에서 9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외 조합은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위 484분의 14 지분을 수용하면서 2021. 10. 19.경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44,570,060원을 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년 금제11940호).』

제2면 밑에서 6행 [인정근거]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약 40년 전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이 소유하던 위 484분의 1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망 H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망 H으로부터 1988. 11. 8.경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매대금 6,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위 1988. 11. 8.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8. 11. 8.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2021. 10. 21. 수용됨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피고들이 취득한 대상인 토지수용보상금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한다.

3.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2 내지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였던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2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외 망 H에게 매도하였고, 원고가 망 H으로부터 1988. 11. 8.경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원고가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 외에도 다른 건물 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전체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자주점유 추정도 반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의 발생 여부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도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이행불능도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2020. 10. 21.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망인 또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내지 입증이 없는바, 원고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차승환, 판사 김한울, 판사 이지현